

용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

제정	1988. 5. 9	조례 제1074호
개정	1996. 3. 1	조례 제 8호(조례·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)
	2005. 10. 5	조례 제 622호
전부개정	2009. 4. 24	조례 제 995호
일부개정	2018. 8. 9	조례 제1835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승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8. 8. 9]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8. 8. 9>

1. “주채무”란 용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로부터 보증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를 말한다.
2. “주채무자”란 제1호의 주채무에 대해 시로부터 채무보증을 받는 자를 말한다.
3. “채권자”란 시가 보증한 주채무의 변제 이행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를 말한다.

제3조(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) ①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채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 신청서를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8. 9>

② 주채무자는 제1항의 채무보증 신청서(이하 “신청서”라 한다)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8. 9>

1. 주채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의 사업계획서
2.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
3. 그 밖의 참고서류

제4조(채무보증의 승인)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인시의회(이하 “시의

회”라 한다)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8. 8. 9>

제5조(채무보증의 통지)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8. 9>

제6조(채무보증서의 교부 등) ① 채권자는 제5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8. 9>

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제3항에 관한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8. 9>

③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. 다만,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을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8. 9>

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5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. <개정 2018. 8. 9>

⑤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4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. <개정 2018. 8. 9>

[제목개정 2018. 8. 9]

제7조(보증채무의 변경)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. <개정 2018. 8. 9>

제8조 삭제 <2018. 8. 9>

제9조(보증채무의 이행)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해 시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8. 9>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

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8. 9>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8. 8. 9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6. 3. 1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622호>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9. 4. 24 조례 제99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8. 9 조례 제183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채무보증 신청서

제 호
용인시장 귀하

주채무자(인)

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사 업 명(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)
2. 내 용
 - 가. 채권자
 - 나. 채무액
 - 다. 이자율 년
 - 라. 상환기간 자 지 년간
 - 마. 상환계획
3. 사 유
 - 가. 주채무 발생
 - 나. 시 보증이 필요한 사유
 - 다.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
 - 라. 기타 참고사항
4. 준수사항
 - 가.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.
 - 나.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
 - 다.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, 채권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, 재산, 자금운용 및 사업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 - 라.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,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 - 마.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

제 호
용인시장(인)

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가 보증함에 있어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.

1. 주채무자
2. 채무건명
3. 채 무 액
4. 이 자 율
5. 상환기간 자 지 년간
6. 상환재원
7. 담 보
8. 용자재원
9. 관계기관
10. 채무보증 근거
11. 기 타
12. 준수사항

- 가.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.
- 나.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다.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, 채권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, 재산, 자금운용 및 사업운용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- 라. 시장은 다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- 마.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.
- 바.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.

[별지 제3호서식]

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

용인시장 귀하

채권자 (인)

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 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.

1. 주채무자
2. 채무건명
3. 채 무 액
4. 이 자 율
5. 상환기간 자 지 년간
6. 상환재원
7. 담 보
8. 용자재원
9. 기 타
10. 준수사항

가.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.

나.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다. 시장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, 재산, 자금 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,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
라.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.

[별지 제4호서식]

채 무 보 증 서

제 호
채권자 귀하

용인시장(인)

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.

1. 주채무자
2. 채무건명
3. 채 무 액
4. 이 자 율
5. 상환기간 자 지 년간
(시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.)
6. 상환재원
7. 담 보
8. 용자재원
9. 관계기관
10. 채무보증근거
11. 기 타
12. 준수사항

가.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.

나.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

다.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, 재산, 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
라.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.

